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10. 2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10월 18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10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116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5. 10. 2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장 종 환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여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생활체육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함.(안 제2조)

○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 지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대다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체육활동이 권장·육성되어 구민의 체력이 증진되고 건전한 여가활동이 조장되도록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도·육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생활체육 단체가 많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보다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먼저 만들었으면 하는데?

○ 답변요지(장종환 문화체육과장) :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할 예정임.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지금까지는 조례도 없이 생활체육 보조금을 지급하였는가?

○ 답변요지(장종환 문화체육과장) : 국민체육진흥법등에 의거 타구와 형평에 맞게 지원해 왔음.

○ 질의요지(남두희 위원) : 생활체육 시설이 전혀 없는 동이 있는데 마포구민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이용 시설을 만들어 주기 바람.

○ 답변요지(장종환 문화체육과장) : 재정 및 장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야 된다고 사료됨.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 수는?
- 답변요지(장종환 문화체육과장) : 총 23개 연합회임.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현재까지는 생활체육 행사에만 보조금을 지원 하였는가?
 - 답변요지(장종환 문화체육과장) : 대회가 개최될때만 지원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10.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여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생활체육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구청장은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구청장은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 지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3. 제정근거

- (1)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5. 8.5 ~ 8.2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5. 10. 1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이하 "마포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마포구민의 건강한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마포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개발·보급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육성·지원
7.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